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포이닉스(김병채)

나. 전화번호 : 031-888-5530

2. 명칭 : 방사형 SBS(Radial type SBS : RSBS) 개질제를 이용하여 표층에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복층구조를 구현한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방사형 SBS(Radial-type Styrene-Butadiene-Styrene)를 주원료로 한 아스팔트 포장용 개질제를 사용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높이고, 입형이 작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상부층에, 입형이 큰 혼합물을 하부층에 동시 포설 다짐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압살수, 진동, 진공흡입 청소차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

<범위>

표층에 상부층과 하부층의 저소음 포장 복층구조를 구성하여 일반포장에 비해 도로교통소음을 9dB(A) 저감시키는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으로,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이용하여 공극률을 22% 이상 확보하면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저압살수, 진동, 진공흡입 청소차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조달청공고제2020-190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디엘텍 주식회사(129-86-33432), 대표이사 정성우(660508-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B동 212호(구미동, 시그마Ⅱ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5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417
 - 제출 기한 : 2020.09.25.(금)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